

## 【 2015.03.16(월) 강원일보 】

### 올림픽 관광도시 대변신 속도 내는 강릉

녹색비즈니스·해양휴양지구 내 특구 첫 사업 시행자 지정  
1,000실 규모 숙박시설 추진...인·허가 단축 지원키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 특구에 대한 첫 번째 사업 시행자가 지정되면서 특구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15일 강릉시에 따르면 2018 평창동계 올림픽 특구인 강릉 녹색비즈니스·해양휴양지구 내 특구 개발사업 시행자로 (주)서해종합건설과 (주)부국엔지니어링을 지난 13일자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는 2017년 말까지 2,000억 원을 투자해 강릉시 강문동 1-1 구 효산리 일원 2만 4,493㎡에 750~1,000실 규모의 숙박시설과 컨벤-

션,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향후 인근의 강문 현대호텔과 같이 개별 지구단위 계획을 입안해 도의 결정을 거쳐 올 하반기 공사에 착수, 2017년 10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사업 예정지 내에 생태자연도 2등급의 송립 일부가 포함돼 있어 실시 계획 승인 과정에서 환경부와의 협의 등이 난제로 대두되고 있는데다 기존 콘도 회원권 보유자 중 현재까지 보상

문제가 해결이 안 된 500여명에 대한 협의도 남아있다.

이와 관련, 장찬영 강릉시 기반시설 지원팀장은 “2018년 동계올림픽 이전 까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인·허가 절차가 원스톱으로 일시불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도, 중앙부처와 사업자 간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릉시는 경포도립공원 해제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과 관련, 오는 4월 2일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5월 12일 강릉시 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5월 중순께 지구단위 계획 결정고시와 지형도면고시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고준기자

### 30억대 예산 풀어 지역 건설경기 부양

속초 소규모 건설사업 투자

【속초】 속초시는 다음 달 추경예산에 소규모 토목사업 예산을 집중 편성, 지역 내 전문건설업체의 경영 안정과 이를 통한 지역 경기 활성화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4월 중 180억~200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하기로 하고 이 중 30억~35억 원을 지역 기반공사와 소규모 건설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먼저 강원학생

진로교육원 진입로 확장공사에 시비 2억 원을 투입하는 것을 비롯해 동명동 수복암 회전교차로 사업에 시비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청초호유원지 도로 개설 등 지역 도로 정비와 소규모 시설공사 발주를 서둘러 접체된 지역 건설경기를 부양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이처럼 시가 지역 소규모 건설

공사에 예산을 집중 편성한 것은 겨울철 건설 비수기를 겪은 지역 건설업체 경영난을 다소 해소하고 토목예산이 지역경기 부양에 비교적 효과가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병선 시장은 “대규모 사업보다는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을 발주함으로써 지역 건설업체 일감을 늘리고 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예산을 집중 편성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박기용기자

## 【 2015.03.16(월) 강원도민일보 】

### 건설협회 도회장 선거 2명 출사표

오인철 태성종합건설 대표  
한상준 우림토건 대표

강원도내 건설업계 수장을 뽑는 건설협회 도회장 선거에 2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이들의 정책 대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건설협회 도회에 따르면 오인철(59) 흥천 태성종합건설 대표와 한상준(55) 강릉 우림토건 대표 2명이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득표 활동을 시작했다.

오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혁신과 화합으로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회원 권리와 함께 소리치는

큰 귀와 큰 입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세부적으로는 △제도개선을 통한 수익성 확보 △건설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저지 △대형공사 분할발주 지역제한 유도 △협회 혁신을 통한 새로운 비전 제시 등을 공약했다.

오 대표는 “공공공사 설계용역 발주시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에 따른 합리적 단가의 정착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한 대표는 규제를 철폐하고 안정을 추구하겠다며 회원사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공약을 내세웠다.

주요 공약으로 △강원도회 통상회비 인하추진 △예산 낭비성 특허권



오인철 대표



한상준 대표

남용 방지 △실적공사비 제도 폐지 추진 △건설법의 자본금 및 기술자 등록 기준 완화 추진 등을 제시했다.

한 대표는 “도회의 통상 회비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높아 인하를 추진하고 부족한 재원은 협회의 긴축재정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협회 도회 차기 회장은 오는 25일 오전 11시 30분 베니키아 춘천베어스호텔에서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된다.

박현철

염광희 강원조달청장  
오늘 명예 퇴임식

염광희(57·사진) 강원조달청장이 16일 오전 11시 강원청에서 명예 퇴임식을 갖는다.

염 청장은 전남 광주 출신으로 전남여고, 평생통신대학을 졸업하고 고려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76년 전북조달청에 서근무를 시작으로 본청 국제물자국 원자재총괄과, 구매사업국 자재장비과, 전자조달국 고객지원팀, 품질관리단 재품질관리과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1월 강원조달청장으로 부임, 도내 우수조달업체 지정 확대 등 조달 행정을 위해 헌신해 왔다.

박현철

## 【 2015.03.16(월) 건설경제 】

아하! 그렇구나

### 하자률 이유로 공사잔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의 처리

Q

〈사례〉 A사는 건물 신축공사를 B사에 도급주었는데, 공시대금은 20억원이었다. 공사도중에 A사는 18억원을 기성금으로 지급하였고, 잔금 2억원이 남았는데, B사가 공사를 완공한 후 잔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A사는 신축건물에 여러군데 하자가 발생하였으니 이를 보수하여 주기 전에는 잔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B사가 하자보수를 시도하였으나 A사는 하자보수가 부실하다면서 계속 잔금지급을 거절하고 나중에는 B사의 하자보수를 거부하였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법적으로는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

A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 할 수 있고, 그 하자의 보수에 같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보수청구권과 동시에행의 관계에 있다. 동시에행의 관계란 한쪽이 자신의 의무이행을 제공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자신의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관계를 말한다.

다만 도급인이 인도받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막바로 보수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선 하자의 보수나 하자보수에 같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에 같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그 손해배상의 액에 상응하는 보수의 액에 관하여만 자기의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나머지 액의 보수에 관하여는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대법원 90다카230).

따라서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보수의 지급을 거절하기 위하여 먼저,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자의 보수에 같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인지

그 입장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본 사례에서 도급인 A사는 완성된 건물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B사의 보수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나중에는 하자보수를 거부하면서 잔금지급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 만약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A사의 입장이 '위 두가지 중 무엇인지를 우선 밝혀야 한다. 그런 후에 A사가 여전히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는 것이라면, 보수해야 하는 하자의 종류와 정도를 재판에서 확정하고, 또한 그 하자를 보수하는 적당한 방법과 그 보수에 필요한 비용 등에 관하여 심리를 한 후 과연 그 건물에 있는 하자가 그 보수에 필요한 비용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보수지급청구를 전부 거절할 만한 정도의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만약 A사가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자보수에 같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면, B사가 배상해야 하는 손해의 액을 확정하여 남은 공사잔금과 비교해서 동시에행의 향변권이 인정되는 범위를 밝혀야 한다(대법원 91다33056).

통상적으로는 하자보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해 소송까지 가게 되면 도급인이 요구하는 것도 수급인이 직접 하자보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자보수비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통은 하자보수비용을 감정인의 감정에 의하여 확정한 다음 그 금액만큼은 남은 공사대금에서 공제 또는 상계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을 명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지급을 명하는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위에서 보듯이 도급인의 동시에행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명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곽동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